

2018 옥외광고 연구포럼

데이터 기반 옥외광고물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디지털 시대에 옥외광고물의 관리행정은 아직도 아날로그의 전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전자정부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은 아직도 종이서류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2017년 옥외광고통계 기준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1인당 연간 약 1,164건의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은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본 연구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새울행정 시스템의 개편과 함께, 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및 타 행정기관과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도 서비스 및 심의제도와와의 연계는 물론, 현행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기준의 강화와 기능 개선을 통해서 향후 광고물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다양한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

이경아 교수 (동서울대학교)

천용석 주임연구원 (한국옥외광고센터)

진민규 주무관 (수원시청)

김경미 주무관 (서초구청)

박진형 주무관 (서대문구청)

최원종 주무관 (곡성군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 ◎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업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인허가 및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의 권한 및 책임, 사업자에 대한 교육 등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 ◎ 옥외광고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신규로 설치되는 광고물은 허가 42,391건, 신고 1,296,842건 등 총 1,339,23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연장하는 광고물은 허가 61,874건, 신고 69,489건 등 총 131,363건으로 집계되었음
- ◎ 2017년 현재 전국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의 수가 1,263명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 및 연장 광고물에 대해 공무원 1인당 연간 약 1,164건의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수준임
- ◎ 불법광고물의 경우 2017년 한 해 제거 및 철거된 광고물은 181,836,320건이며 이는 공무원 1인당 연간 약 143,972건을 담당하는 수준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 짧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은 오랜 동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 또한, 허가(신청) 건에 대한 식별 및 관리할 수 있는 고유정보가 부재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 가령, 업소의 신규, 폐업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에 있어서 정확한 관리가 어려우며, 이는 장기적으로 무연고간판 및 불법광고물의 범람으로 이어지고 있음
- ◎ 이에, 현재의 아날로그 방식의 광고물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 효율적인 디지털 행정시스템의 도입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국민(민원인)에게도 불필요한 행정을 단순화하고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10대 중점사업 중 하나인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사업과도 그 기초를 공유하고 있음
- ◎ 이에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공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말했으며,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밝힘

2.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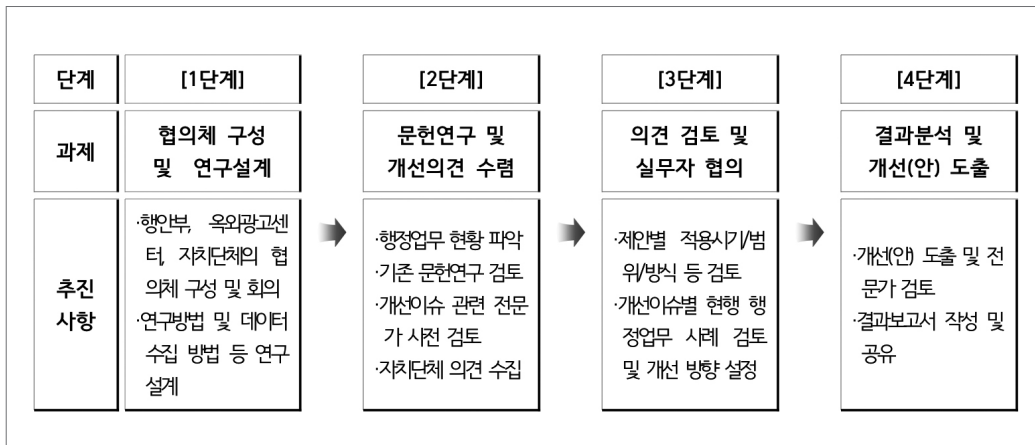
- ◎ 현행 광고물 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새을행정시스템의 이해와 실제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사항
 - 현행 법령상 행정서식 및 행정절차의 문제 사항
 - 그 외의 기타 문제 사항 등
-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가능한 제안을 수렴하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실무자적 견해를 반영함
 - 기초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
- ◎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타기관의 행정정보공유의 필요성 및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
 - 신규 업소의 인허가 관련 타법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국세청(세무서)로부터 자료의 공유 등으로 불법적인 업소에 대한 간판 설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검토
 - 업소의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정비를 위해 국세청 자료의 활용 가능성 검토
- ◎ 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행 광고물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통합)하고, 옥외광고 관련 타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통합·공유함으로써 대국민 옥외광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3. 연구의 추진 절차

-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표 1>과 같이 4단계의 절차를 거침

- 1단계로, 연구 수행에 앞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추진절차를 공유함
-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방법 및 절차,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함
- 2단계로, 옥외광고 행정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옥외광고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현재까지 발견된 문제점을 도출함
- 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수렴
- 3단계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옥외광고 담당공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중요도 및 개선가능성을 검토함
- 또한, 단기/중기/장기적 시점을 통해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과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제시
- 마지막으로, 개선(안)을 보고서 형태로 구성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안하여 단기적/중장기적으로 행정시스템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표 1〉 연구 추진 프로세스



4. 연구의 기대효과

- ◎ 본 연구를 통해서 자치단체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 업무가 기피 대상이 아닌 선호하는 업무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며,
- ◎ 옥외광고를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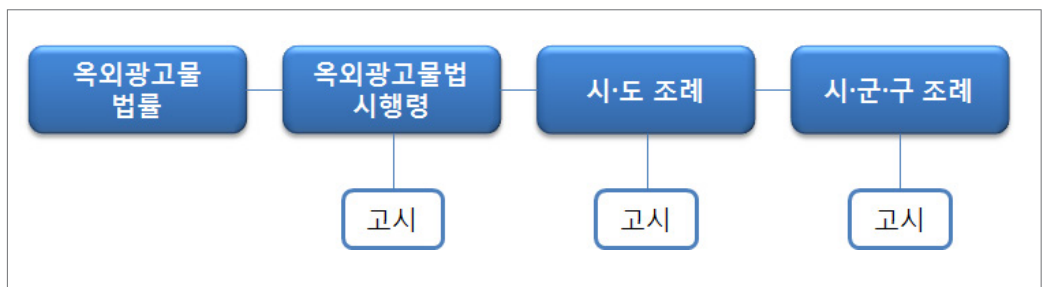
- ◎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옥외광고물을 접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효율적인 광고물의 관리를 통한 개선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II. 옥외광고 행정서비스의 고찰

1.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현황

- ◎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자치법규인 시·도 조례 및 시·군·구 조례로 이어짐
- ◎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체계와 선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및 인허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음
- ◎ 시·도 조례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구 조례에서는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절차가 상세히 구성되어 있음
- ◎ 이외에도 개별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해 별도 관리되는 사항도 존재함 - 특정지역, 정비시범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시범사업 대상 광고물 등

〈그림 1〉 옥외광고물 법률 체계



- ◎ 법률-시행령-조례-고시로 이어지는 긴 행정절차는 광고물을 설치·표지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어려운 업무로 인식될 수 있음
- ◎ 뿐만 아니라, 이를 처음 접하는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에게도 옥외광고 업무는 어려운 행정업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옥외광고 부서는 자치단체 내에서도 기피 부서 중 하나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음

- ◎ 이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부분의 행정업무와 권한 및 재량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옥외광고물 법령상 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

구분	관련 조항
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의 절차(제7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제9조) /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제10조)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제24조)
표시방법	일반적 표시방법(제12조)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제14조)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제15조) /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제16조)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7조) / 그 밖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제20조) / 표시방법의 완화(제21조) /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제22조) / 표시방법의 강화(제25조)
운영 및 관리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제23조) /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제26조) / 주민협의회의 운영(제27조)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제28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제32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제33조) / 심의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제35조)

2. 옥외광고 행정시스템의 구성과 사용항목

- ◎ 자치단체의 옥외광고 행정업무를 돕고 지원하는 전자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청(서울)정보시스템(이하 서울행정시스템)’이 있음
-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은 시·도(광역시)의 전자행정시스템이며, 서울행정시스템은 시·군·구(기초)의 전자행정시스템임
- ◎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권한자는 시·군·구청장인 관계로 관련 행정사항 역시 대부분 서울행정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음
- ◎ 시스템 내 데이터 종류로는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정보, 광고물 종류별 허가·신고 현황, 안전도 검사, 광고물의 도로점용,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과세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실제 생산 및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종류는 광고물 관련 대장,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 대장, 안전도 검사 대장이 전부이며, 그 외에 데이터는 생산 및 사용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음

〈그림 2〉 서울행정시스템 화면 및 실제 사용항목

서울행정시스템
영상정보과 김관리어님
로그아웃 정보변경

직원검색 이름 직원검색 검색 검색 업무바로가기 업무 바로가기 추가

복무관리 민원 의회 생산행정 민방위 지역산업 법제 감사 시스템관리 복지 전체업무보기

데이터사업관리 | 상공업무관리 | 노사지열관리 | 정보통신공사사업관리 | 공동관리 | 보고통계관리 | 행정사업관리 | 공간정보관리

상공업무관리

- 담배도소매업관리
- 계량기관리
- 유통업관리
- 옥외광고물(업)**
- 옥외광고물대장
- 옥외광고물대장
- 옥외광고물안전점검사대
- 옥외광고물도로점검
- 불법옥외광고물관리대장
- 옥외광고물전수조사
- 옥외광고물신고대상자
- 불법광고물정비실적현황
- 불법광고물행정처분실적
- 옥외광고물신고처리현황

옥외광고물대장목록

구분/운영상태 --전체--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번호
건물명/표시내용 허가일자 1800-01-01 ~ 2016-12-31
광고주성명/생년월일 표시종료일자 2016-12-31 ~ 9999-12-31
업소명 ☐ 행정통정비 연장신고일자
설거여부/기간 ☐ 설거 ☐ 광고물 종류 ☐ 유동형 제외
행정동/법정동 ☐ 전체 --전체-- 번지(본번-부번) ☐ 조명종류
실명제관리번호 조명종류
처리시군구 도로명주소

1/14 (총 133건)

순번	구분	허가(신고)번호	실명제관리번호	허가신고일	연장신고일	광고물종류	업소명
1	허가	2006-4940013-09-1-00014		2006-07-19	2014-07-09	벽면이용간판(가로)	S-Oil 에스-오일
2	허가	1999-4650010-09-1-00787		2008-05-16	2017-07-19	지주이용 간판	서전주새마을
3	허가	2006-4650075-09-1-00367		2010-01-08	2017-07-14	옥상간판	이안스튜디오

- ◎ 자치단체 행정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되는 항목 및 데이터가 한정되는 이유는 행정업무의 대부분이 전자방식이 아닌 종이문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의 경우 접수된 광고물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류 등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처리가 가중되고 있음(하혜영, 2013)

3. 행정시스템 데이터 활용의 한계

- ◎ 서울행정시스템의 데이터에는 광고물 신고 시 추가되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최초 생산자가 개별 자치단체인 관계로 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를 모두 개별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 ◎ 서울행정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보수를 행정안전부 산하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집 및 접근권한이 없으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도 데이터의 수집은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권한(사용)은 어려운 실정임
- ◎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 별도의 개별 서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간의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게 관리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활용이 어려움

-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옥외광고 행정서비스를 다른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천용석 외, 2016)

Ⅲ.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업무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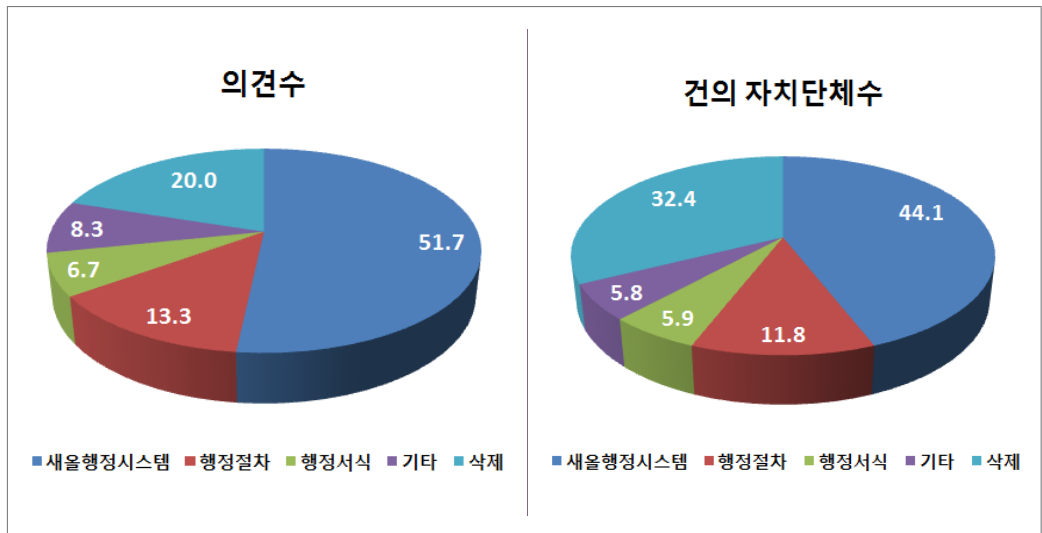
1. 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업무 개선 의견 제출 현황

- ◎ 본 연구는 자치단체 행정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10월 24일까지 자치단체별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업무 개선 의견을 취합하였음
- ◎ 각 자치단체별 건의부문을 새울행정시스템, 행정절차, 행정서식, 기타로 구분하여 문제점 및 검토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치단체가 바라보는 개선방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음
- ◎ 강원도 홍천군 등 19개 자치단체에서 총 60개의 개선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연구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관리·행정업무 개선과 관련이 없거나 법령의 개정, 인력의 지원 등과 같이 다른 차원의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한 의견 12건을 제외하고 48개의 의견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한정하였음
- ◎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 중 51.7%에서 새울행정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옥외광고물 행정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

〈표 3〉 전체의견 중 건의부문 분포도

건의부문		새울 행정시스템	행정절차	행정서식	기타	삭제	합계
의견수	건수	31	8	4	5	12	60
	비율(%)	51.7	13.3	6.7	8.3	20.0	100.0
건의 자치단체수	건수	15	4	2	2	11	34
	비율(%)	44.1	11.8	5.9	5.9	32.4	100.0

〈그림 3〉 전체의견 중 건의부문 분포도



◎ 〈표 4〉는 현행 새울행정시스템 및 자치단체 시스템 수준에서 약간의 개선만으로도 가능한 행정서비스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48건 중 19건(39.58%)의 의견이 이에 해당하였음

〈표 4〉 낮은 단계의 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한 행정서비스 의견비율

건의부문	의견수			건의 자치단체수		
	전체건수 (a)	건수 (b)	비율 (%) ($\frac{b}{a} \times 100$)	전체건수 (a)	건수 (b)	비율 (%) ($\frac{b}{a} \times 100$)
새울행정시스템	31	17	54.84	15	11	73.33
행정절차	8	0	0.00	4	0	0.00
행정서식	4	2	50.00	2	2	100.00
기타	5	0	0.00	2	0	0.00
합계	48	19	39.58	23	13	56.52

◎ 〈표 5〉는 옥외광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즉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한 행정서비스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48건 중 6건(12.50%)의 의견이 이에 해당하였음

〈표 5〉 옥외광고 업무지침 제시 정도로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 의견비율

건의부문	의견수			건의 자치단체수		
	전체건수 (a)	건수 (b)	비율(%) ($\frac{b}{a} \times 100$)	전체건수 (a)	건수 (b)	비율(%) ($\frac{b}{a} \times 100$)
서울행정시스템	31	4	12.90	15	4	26.67
행정절차	8	1	12.50	4	1	25.00
행정서식	4	0	0.00	2	0	0.00
기타	5	1	20.00	2	1	50.00
합계	48	6	12.50	23	6	26.09

◎ 〈표 6〉은 서울행정시스템 및 자치단체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구성이 필요하나 쉽게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48건 중 5건(10.42%)의 의견이 이에 해당하였음

〈표 6〉 별도의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나 쉽게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 의견비율

건의부문	의견수			건의 자치단체수		
	전체건수 (a)	건수 (b)	비율(%) ($\frac{b}{a} \times 100$)	전체건수 (a)	건수 (b)	비율(%) ($\frac{b}{a} \times 100$)
서울행정시스템	31	5	16.13	15	4	26.67
행정절차	8	0	0.00	4	0	0.00
행정서식	4	0	0.00	2	0	0.00
기타	5	0	0.00	2	0	0.00
합계	48	5	10.42	23	4	17.39

◎ 〈표 7〉은 서울행정시스템 및 자치단체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와 국세청 DB 등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48건 중 18건(37.50%)의 의견이 이에 해당하였음

◎ 이는 낮은 단계의 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한 행정서비스 의견(39.5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견으로 제시되었음

〈표 7〉 중장기적인 시스템 구성과 외부 DB와의 연계에 의해 추진 가능한 행정서비스 의견비율

건의부문	의견수			건의 자치단체수		
	전체건수 (a)	건수 (b)	비율(%) ($\frac{b}{a} \times 100$)	전체건수 (a)	건수 (b)	비율(%) ($\frac{b}{a} \times 100$)
새울행정시스템	31	5	16.13	15	4	26.67
행정철차	8	7	87.50	4	3	75.00
행정서식	4	2	50.00	2	1	50.00
기타	5	4	80.00	2	2	100.00
합계	48	18	37.50	23	10	43.48

◎ 수원시청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새울행정시스템에서 광고물의 광고주(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 및 등록업체의 관리에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사항과 매칭되지 않아 행정처리가 어려움
- 이에 광고물 및 등록사업자에 데이터 매칭을 위한 고유 key값을 부여하고 세무서와 연동하여 사업자의 식별을 가능하게 처리
- 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와 국세청(세무서) 정보 시스템 연계 처리로 업소의 휴·폐업 관리 용이, 불법적인 광고물 표시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자료 관리의 효율성 제고

◎ 부천시청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정비 등을 위한 전수조사에 따른 행정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새울행정시스템(옥외광고물)에서 기능으로는 존재하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전수조사 카테고리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요기능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이 필요
- 전수조사 세부내역 및 이미지를 삽입·출력 가능하게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전산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 방안 검토 요청
- 행정처분 범칙금이 세외수입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요청

◎ 〈표 8〉은 제시된 자치단체 의견 중 연구 논의를 통해 관리·행정업무 개선과 관련 없거나 인력 증원, 업무미숙에 따르는 사항의 의견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60건 중 12건(20.00%)의 의견이 이에 해당하였음

〈표 8〉 삭제된 의견비율

건의부문	의견수			건의 자치단체수		
	전체건수 (a)	건수 (b)	비율(%) ($\frac{b}{a} \times 100$)	전체건수 (a)	건수 (b)	비율(%) ($\frac{b}{a} \times 100$)
새울행정시스템	36	5	13.89	19	5	26.32
행정절차	11	3	27.27	7	3	42.86
행정서식	4	0	0.00	2	0	0.00
기타	9	4	44.44	6	3	50.00
합계	60	12	20.00	34	11	32.35

◎ 〈표 9〉는 삭제된 주요내용, 의견을 제시한 자치단체를 기술한 것임

〈표 9〉 삭제된 내용

연번	자치단체명	건의부문	주요내용
1	강원도 홍천군	기타	인력부족
2	경기도 의왕시	기타	새울시스템상의 광고물 업무관련 도움말 업그레이드
3	경기도 의왕시	기타	다양한 옥외광고물 민원관련 법률 해석 및 정보부족
4	경기도 이천시	행정절차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울행정시스템	연장신고 안내문 일괄출력 기능 추가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울행정시스템	허가변경사항 발생 시 허가일 자동연장 오류
7	서울특별시 중구	새울행정시스템	광고물 연장 안내문 출력시, 기연장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8	세종특별자치시	기타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 제5조를 개정하여 허가나 신고로 규정할 필요
9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절차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위반 등에 대한 조치사항이 관련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10	전라남도 여수시	새울행정시스템	옥외광고사업 주소 변경 신청시 변경등록 대상을 새울 민원처리 화면에서 바로 호출되어 변경(수정)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
11	충청남도 금산군	행정절차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단속 특례 등 법적 근거 신설
12	충청남도 예산군	새울행정시스템	신청서에 작성할 필요가 없는 항목들을 시스템상에서 삭제

2. 옥외광고물 관리 · 행정업무 개선 방안

(1) 낮은 단계의 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한 행정서비스

◎ <표 10> 내용을 분석하면 새울행정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1건 중 17건(54.84%)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고자 정보란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 60건 중 단기간에 시정 가능한 「낮은 단계의 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한 행정서비스」 19건은 31.67%에 해당함

〈표 10〉 낮은 단계의 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한 행정서비스 내용

연번	자치단체명	건의부문	주요내용
1	강원도 횡성군	새울행정시스템	광고자정보란의 법인 생년월일 오류
2	경기도 부천시	새울행정시스템	허가, 연장 수수료 및 안전도 검사비 자동 산정 기능
3	경기도 수원시	새울행정시스템	건물 소유자 인적사항 추가 관리
4	경기도 수원시	행정서식	신고(허가)증 주의사항 안내 추가
5	경기도 양평군	새울행정시스템	광고자정보란의 법인 생년월일 오류
6	경기도 의왕시	행정서식	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 시 법인번호입력 불가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울행정시스템	광고주 생년월일, 법인번호 선택 및 입력기능 추가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울행정시스템	필증 내 허가조건 수정 기능 추가 등 가독성 향상 방안 필요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울행정시스템	옥외광고물대장 상 광고물 등의 수정사항(변경내용, 입력 담당자, 입력날짜 등) 이력이 남을 수 있도록 개선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울행정시스템	옥외광고업 대장에 법인, 개인 구분하여 필터링 할 수 있도록 개선
11	서울특별시 중구	새울행정시스템	허가 및 신고가 유효한 광고물과 표시기간이 종료된 광고물을 분류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12	서울특별시 중구	새울행정시스템	별도 목록이 필요할 수 있는 광고물들에 대해서만 간편하게 별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13	서울특별시 중구	새울행정시스템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시 도로점용 여부를 별도로 체크하여 옥외광고물 대장에서도 분류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14	전라남도 여수시	새울행정시스템	표시기간 연장 제외 광고물에 대해 새울 시스템 상 전국 단위로 일괄 정비하여 연장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 (표시기간연장대상제외여부체크란을두어한번확인된대상을재차연장안내가 되지않도록프로그램개선)

연번	자치단체명	건의부문	주요내용
15	전라남도 여수시	새울행정시스템	법인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성명과 생년월일 란에 법인명과법인등록번호를병기하도록서식을개정및새울행정시스템 상에서도변경
16	충청남도 금산군	새울행정시스템	옥외광고물대장에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 구분 표시
17	충청남도 금산군	새울행정시스템	광고물 종류 명칭' 법령 용어로 통일(현수막게시틀→현수막 게시시설), 광고물종류정렬을유사한범주순서로정렬 (고정광고~유동광고)
18	충청남도 당진시	새울행정시스템	광고주 입력란에 생년월일과 법인번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19	충청남도 예산군	새울행정시스템	개인정보라며 꺼리는 민원인이 간혹 있거나, 기존 등록정보에 생년월일이 아닌 법인등록번호가입력된경우가많아생년월일을 입력하지않아도광고자 정보가저장되도록개선

◎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양평군 등의 의견을 보면 새울행정시스템에서 민원처리 시 개인명 뿐 아니라 법인명으로 접수할 때에도 '광고자 정보'란에 생년월일을 반드시 입력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감

◎ 하지만, 법인번호로도 입력이 안 되어서 1900-01-01 등의 허수로 입력하면 출력되는 허가증에도 생년월일란에 위와 동일한 숫자가 인쇄됨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광고자 정보 중 생년월일 란을 필수입력이 아닌 선택 입력사항으로 변경하거나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도 입력 · 저장되도록 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아래 <그림 4>는 그 사례를 나타낸 것임

〈그림 4〉 서울행정시스템에 나타난 광고자 정보란의 법인 생년월일 오류 사례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옥외광고물대장등록' (Outdoor Advertising Registration) interface. The main form includes fields for '허가(신고)번호' (Permit/Report Number), '운영상태' (Operating Status), and '광고자 정보' (Advertiser Information). A pop-up window titled '공동 - 주민정보조회' (Joint - Resident Information Search) is open, showing a search for a resident with ID '110111-' and name [REDACTED]. The pop-up displays a table with columns for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성명' (Name), and '주소' (Address). The table shows one entry: '주소(도로명)' (Address (Road Name)).

- ◎ 서울 중구 등의 의견을 보면 현재 서울행정시스템은 허가 및 신고가 유효한 광고물과 표시기간이 종료된 광고물을 분류해서 조회할 수 없어서,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허가 및 신고가 유효한 광고물과 표시기간이 종료된 광고물을 분류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 경기도 수원시의 의견을 보면 옥외광고물 인허가 사항 외의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벽보 및 전단)을 설치 및 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허가 후 발송하는 신고(허가)증 하단 부분에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기능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 이를 통해 불법행위사전 예방활동 전개와 추후 불법광고물 정비효율을 증대할 수 있음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아래 〈그림 5〉는 그 사례를 나타낸 것임

〈그림 5〉 신고(허가)증 하단부분 주의사항 추가 사례 (하단 박스의 “주의사항 안내”)

제 [REDACTED] 호		처리부서명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		담당자명	김경미		
		전화번호	02-2155-6797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성명	[REDACTED]	생년월일	1911년1월11일	
	업소명	[REDACTED]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11안길 38-21 (우면동)			
광고물등의 종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수량	1	사용자재	
광고물등의 규격	1.16*1.71(m) : 교육개발원4	광고내용	바비룩 18.11.5 소심의도안변경		
표시위치 또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3 (양재동, 교육개발원 4)				
표시기간	2016년10월01일부터 2019년09월30일까지				
광고물등 관리자	성명	[REDACTED]	생년월일	1911년1월11일	
	업소명	[REDACTED]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11안길 38-21 (우면동)	
시공업소	대표자	[REDACTED]	생년월일	1911년1월11일	
	업소명	[REDACTED]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11안길 38-21 (우면동)	
허가조건	☐ 허가(신고)조건 ☐ 관계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나 기타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저촉될 경우 본 허가(신고)가 취소되며, 허가(신고)가 취소된 광고물은 철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주 및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설치 후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 및 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광고물은 허가(신고)가 취소됩니다. ☐ 광고물을 계속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시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광고물이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인 경우에는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돌출형 간판의 경우 설치 후 공유지(국유지, 사유지, 공유지 등)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도로법에 의거하여 도로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신고를 수리)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REDACTED] 서 초 구 청 서초구청장인					
<주의사항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철거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신고(허가) 신청서 내용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신고(허가)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2. 불법옥외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설치 또는 배부할 경우					

(2) 옥외광고 업무지침(가이드라인) 제시 정도로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

- ◎ <표 11> 내용을 분석하면 「옥외광고 업무지침 제시 정도로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에서는 새울행정시스템, 행정절차에 관한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 60건 중 단기간에 시정 가능한 「옥외광고 업무지침 제시 정도로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 6건은 10.00%에 해당함

<표 11> 옥외광고 업무지침 제시 정도로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 내용

연번	자치단체명	건의부문	주요내용
1	경기도 수원시	새울행정시스템	행정동정비 처리
2	경기도 양평군	새울행정시스템	광고물 설치위치 불분명(도로명 주소)
3	경기도 오산시	새울행정시스템	연장 미대상 광고물의 경우 자동처리 필요
4	경기도 의왕시	행정절차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 필요
5	충청남도 금산군	기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업무처리지침 마련(시각적으로 한눈에 알기 쉬운 업무처리지침 마련)
6	충청남도 예산군	새울행정시스템	기본 입력된 주소와 표시장소의 주소가 다를 경우 재등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 ◎ 경기도 수원시 등의 의견을 보면 새울행정시스템에 인허가 사항 입력 완료 후 옥외광고물 대장 조회 시 ‘행정동 정비’란을 클릭하고 조회했을 때와 클릭을 하지 않고 조회했을 때의 결과가 달라 인허가 사항 파악이 어려움
-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옥외광고물 대장 조회시 한 번에 모든 정보가 조회될 수 있도록 자료 정비(신고, 허가 및 연장 내역을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요청)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림 6>은 그 사례를 나타낸 것임

〈그림 6〉 서울행정시스템에 나타난 행정동 정비 사례

옥외광고물대장목록

→ 옥외광고물대장목록

① 첨부서류조회 ② 건축물대장 ③ 행정처분목록 ④ 지도점검목록 ⑤ 도움말

구분/운영상태: --전체--

건물명/표시내용:

광고주성명/생년월일:

업소명: 전국 24시

설거여부/기간: ☐ 설거

행정동/법정동: ☐ 전체

실명제관리번호:

처리시군구:

허가(신고)번호:

허가일자:

☐ 표시종료일자:

연장신고일자:

광고물 종류: ☒ 유동현 제외

번지(본번-부번):

조명종류:

도로명주소:

조회

표시종료일 기준: ☒ 한달이내 ☒ 경과 후 한달이내 ☐ 한달 이상 경과 1/3 (총 22건)

순번	구분	허가(신고)번호	실명제관리번호	표시시작일자	표시종료일자	광고물종류	업소명
1	허가			2018-11-28	2021-11-27	교통수단이용 광고	(주)전국 24시콜
2	허가			2018-10-10	2021-10-09	교통수단이용 광고	(주)전국 24시콜
3	허가			2018-10-01	2021-09-30	교통수단이용 광고	전국 24시콜 화물
4	허가			2018-08-23	2021-08-22	교통수단이용 광고	(주)전국 24시콜
5	허가			2018-09-01	2021-08-31	교통수단이용 광고	전국 24시콜 화물
6	허가			2018-05-04	2021-04-30	교통수단이용 광고	전국 24시콜 화물
7	허가			2018-03-23	2021-03-22	교통수단이용 광고	(주)전국 24시콜
8	허가			2017-11-02	2020-10-31	교통수단이용 광고	전국 24시콜 화물
9	허가			2017-07-06	2020-06-30	교통수단이용 광고	(주)전국 24시콜
10	허가			2017-07-14	2020-06-30	교통수단이용 광고	(주)전국 24시콜

- “행정동정비” 체크 없이, ‘전국24시’ 관련 광고물 조회하면 밑의 광고물이 조회되지 않음
- “행정동정비”를 체크하면, 전체 조회에서 안나오는 자료가(아래) 조회됨
- 주소가 입력이 잘되어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음

옥외광고물대장목록

→ 옥외광고물대장목록

① 첨부서류조회 ② 건축물대장 ③ 행정처분목록 ④ 지도점검목록 ⑤ 도움말

구분/운영상태: --전체--

건물명/표시내용:

광고주성명/생년월일:

업소명: 전국 24시

설거여부/기간: ☐ 설거

행정동/법정동: ☒ 전체

실명제관리번호:

처리시군구:

허가(신고)번호:

허가일자:

☐ 표시종료일자:

연장신고일자:

광고물 종류: ☒ 유동현 제외

번지(본번-부번):

조명종류:

도로명주소:

조회

표시종료일 기준: ☒ 한달이내 ☒ 경과 후 한달이내 ☐ 한달 이상 경과 1/1 (총 1건)

순번	구분	허가(신고)번호	실명제관리번호	표시시작일자	표시종료일자	광고물종류	업소명
1	허가			2018-09-11	2021-09-10	교통수단이용 광고	(주)전국 24시콜

◎ 경기도 의왕시의 의견을 보면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광고물의 표시기간과 관련하여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은 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안전점검 대상인 경우는 제외)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시마다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 발생하여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 필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림 7>는 의왕시의 의견을 나타낸 것임

<그림 7> 허가(신고) 후의 의미와 업무처리방법의 명확화에 대한 의왕시 의견

(1)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라는 의미가 허가·신고 시에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기간으로 허가·신고증이 발부 된 후,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 자사광고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발급된 허가·신고증 상의 표시종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예) 허가·신고 시 표시기간을 ‘2018. 11. 2. ~ 2021. 11. 1.’로 발급 후 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사광고물을 그대로 변동 없이 사용하는 경우 표시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

→ 이 경우 허가·신고증 상에 표시기간 미적용에 관한 안내 명문화 필요

허가조건

○ 광고물을 계속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시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광고물이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인 경우에는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에 해당하는 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 후 자사광대로 변동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제외)

→ 표시제한미적용에 관련된 안내문구 (안)

→ 또한 이러한 방식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라는 의미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새시스템에서는 일괄적으로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지나면 연장신고 기간이 초과 된 대상으로 분류됨(연장신고 대상인 광고물 중 그 신고기간이 지난 광고물과 동일시). 이에 대한 시스템상의 정비필요

(2) 또는 최초 허가·신고 시부터 표시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허가·신고증을 발급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처리에 모호함이 존재하여 명확한 지침필요

예) 허가·신고 시 처음부터 표시기간을 ‘2018. 11. 2. ~ 연속’으로 발급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라는 의미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표시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연장 미신고 광고물로 남을 여지는 없음

→ 단, 이 방식은 표시기간이 지나도 기존 광고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확인일 기준 표시종료기간으로 검색이 불가함으로 어려움이 존재

- ◎ 충청남도 금산군 등의 의견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표시방법·기준이 복잡하여, 담당 공무원 및 옥외광고업자도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어 관련자가 시각적으로 한 눈에 알기 쉬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3) 별도의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나 쉽게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

- ◎ <표 12> 내용을 분석하면 「별도의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나 쉽게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에서는 새울행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 60건 중 단기간에 시정 가능한 「별도의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나 쉽게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 5건은 8.33%에 해당함

〈표 12〉 별도의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나 쉽게 개선 가능한 행정서비스 내용

연번	자치단체명	건의부문	주요내용
1	경기도 부천시	새울행정시스템	불법옥외광고물관리대장 온나라 전자결재 연계기안
2	경기도 부천시	새울행정시스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연계 기능
3	경기도 오산시	새울행정시스템	수수료 계산 기능 추가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울행정시스템	연장안내문 문구 수정 등 모든 구비서류에 대한 선택기능 추가
5	충청남도 금산군	새울행정시스템	지정계시대 이용 현수막 표시신고 간소화

- ◎ 경기도 부천시 등의 의견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전수조사시스템을 개별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등 5개 자치단체 방문결과 새울행정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이중관리에 따른 불편 호소
- ◎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을 별도 도입·운영하므로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반면 상호 연계되지 않아 관리 및 사용이 불편함 그러므로 중앙에서 새울행정시스템의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 기능 향상이 필요
-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새울행정시스템에 행정계고, 이행강제금 등 사전예고 통지 시 관련 자료를 엑셀로 다운 받아 별도로 전자결재 상신하고 있어 수작업으로 인한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불법옥외광고물관리대장과 온나라 전자결재 연계기안 기능 추가를 요구함
- ◎ 또한 새울행정시스템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세외수입관리시스템과 연계기능이 없어 수기작업으로 부과하여 불편함 해소를 위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연계 기능추가를 요구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의 의견에 의하면 연장안내문의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이 고정되어 있어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또는 미연장 광고물 연장신고 안내 시 민원인 혼란 초래하고 있음
-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새울행정시스템에 연장안내문 문구 수정 등 모든 구비서류에 대한 선택기능 추가를 요구하고 있음

〈그림 8〉 옥외광고물 연장안내문 발송 시 화면

□ 옥외광고물_연장안내문_발송주소등록

☐ 구비서류중 원색사진 1부 제외

문의부서	도시계획과	우편번호	
문의담당자	김경미	관인구분	시군구
문의전화번호		수수료	수수료 포함
기관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출력일자	2018-12-11

발송주소

추가 안내사항

※ 표시기간이 1년 미만의 광고물은 출력물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4.01.01 이후 도로명주소 미 존재 시 주소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력 닫기

※ 위 그림에서 출력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구가 나오며, 수정은 불가능함

- ◎ 충청남도 금산군의 의견에 따르면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규격 및 표시장소가 정해져 있어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표시기간이 짧고(14일), 빈번하게 다량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다른 광고물과 동일하게 엄격한 신고수리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어 현수막 신고수리 행정력 낭비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새울행정시스템에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표시신고 간소화 기능을 추가하고 해당 시스템에 기 등록된 정보에 대한 엑셀파일 업로드 등 정보 연동기능 추가를 요구하고 있음

(4) 중장기적인 시스템 구성과 외부 DB와의 연계에 의해 추진 가능한 행정서비스

◎ <표 13> 내용을 분석하면 「중장기적인 시스템 구성과 외부 DB와의 연계에 의해 추진 가능한 행정서비스」에서는 새울행정시스템, 행정절차, 행정서식, 기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 60건 중 단기간에 시정 가능한 「중장기적인 시스템 구성과 외부 DB와의 연계에 의해 추진 가능한 행정서비스」 18건은 30.00%에 해당함

<표 13> 중장기적인 시스템 구성과 외부 DB와의 연계에 의해 추진 가능한 행정서비스 내용

연번	자치단체명	건의부문	주요내용
1	경기도 부천시	새울행정시스템	불법옥외광고물관리대장 기능 개선
2	경기도 부천시	새울행정시스템	스마트폰 관리 기능
3	경기도 의왕시	행정서식	신청서 서식 개정
4	경기도 의왕시	행정서식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시 변경 전 관리자의 서명 요구 개선 필요
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정절차	건축허가시 광고물을 포함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건축물과 일괄 사용승인 처리
6	부산광역시	새울행정시스템	식품위행법 등 간판설치가 수반되는 인·허가대상 업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새울행정시스템의기능을확대할수있는시스템구축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울행정시스템	옥외광고업(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휴·폐업 등)신고 시, 관할구청과세무서간의시스템연계로자동통보토록개선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타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기한이 지나 허가(신고)신청할 경우, 근거조항(과태료부과등)을마련하여연장허가(신고)가될수있도록개선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타	안전점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위반조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타	사후심의, 허가(신고)를 원할 경우 서울시 전체 관련 지침 마련
11	서울특별시 중구	새울행정시스템	세외수입 및 홈텍스 시스템과 자동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참고)
1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절차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 주후 건물사용자는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건물주(소유자)가최초제출한간판표시계획서에의거통일된 기준으로광고물을설치
13	충청남도 금산군	행정절차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자 특별관리

연번	자치단체명	건의부문	주요내용
14	충청남도 금산군	행정절차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확화
15	충청남도 금산군	행정절차	상습(지속, 반복, 고의)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한 별도 조치
16	충청남도 금산군	행정절차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광고물의 세부 조항 마련
17	충청남도 금산군	행정절차	불법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등에 광고물 실명제 도입
18	충청남도 금산군	기타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전문인력 의무배치 제도 마련 (강력한 단속권한 - 특별사법경찰권한)

- ◎ 경기도 부천시 등의 의견에 의하면 현 새울행정시스템의 옥외광고관리 프로그램이 허가 등 합법적으로 등록된 광고물의 일부 기능만 지원하며, 불법 등 미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 사진출력, 전자결재 등이 지원되지 않아 새울행정시스템의 옥외광고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이 절실함
-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새울행정시스템에 현재 엑셀 관리대장 리스트만 출력되어 세부내역 및 사진자료를 등록만 하고 출력 할 수 없어 별도 워드작업으로 행정계고를 통보하고 있는 불편의 해소를 위해 불법옥외광고물관리대장(세부내역, 사진) 출력 기능추가를 요구함
- ◎ 또한 새울행정시스템에 전수조사 및 민원발생시 현장에서 바로 공부열람, 입력, 수정이 가능한 기능이 없어 현황관리에 불편함 해소를 위한 옥외광고물 현장조사를 위한 새울행정시스템 스마트폰 관리 기능추가를 요구하고 있음
- ◎ 경기도 수원시청은 광고물 인허가 및 광고업 등록 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세청 정보와 새울행정시스템의 연계 처리를 요구함
 - 새울행정시스템에서 광고물의 광고주(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 및 등록업체의 관리에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사항과 매칭되지 않아 행정처리가 어려움
 - 이에 광고물 및 등록사업자에 데이터 매칭을 위한 고유 key값을 부여하고 세무서와 연동하여 사업자의 식별을 가능하게 처리
 - 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와 국세청(세무서) 정보 시스템 연계 처리로 업소의 휴·폐업 관리 용이, 불법적인 광고물 표시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의견에 의하면 옥외광고업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민원인이 통합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 관할 세무서 간에 통보 되지 않음

- ◎ 옥외광고업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휴 · 폐업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70만원~400만원)가 부과됨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옥외광고업(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휴 · 폐업 등)신고 시, 관할 구청과 세무서 간의 시스템 연계로 자동 통보토록 새올행정시스템개선 필요

- ◎ 서울 중구 등의 의견을 보면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관련 다른 시스템과 연계됨에 불편함이 있는 등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아 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시 도로점용 여부를 별도로 체크하여 옥외광고물 대장에서도 분류 가능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및 홈텍스 시스템과 자동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참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인천광역시 중구 등의 의견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신청을 건물소유자 뿐 아니라 사용자 등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광고물 관리가 어렵고, 불법광고물 게시 등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관리가 어려움

-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간판을 게시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단계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허가(신고)절차에 의해 추후 건물사용자는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건물주(소유자)가 최초에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의거 통일된 기준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함

- ◎ 또한 개별설치 건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자가 별도 신고하도록 하여 개별 광고물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 이는 위반 시 제재 대상은 건물주로 위법사항 발생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한 기대효과를 제시하였음

- ◎ 경기도 의왕시 등의 의견에 의하면 현재 사용 중인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 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서식은 허가 · 신고, 변경허가 · 신고, 연장허가 · 신고 등 세부적인 분류를 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청민원 유형이 보다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도록 행정서식 개정을 요구 <그림 9>은 의왕시의 의견을 나타낸 것임

〈그림 9〉 경기도 의왕시 의견

현 행	개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호서시)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정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위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가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양쪽) <table border="1"> <tr> <td>접수번호</td> <td>접수일</td> <td>처리기간</td> <td>7일(신고: 3일)</td> </tr> </tabl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통합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위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가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양쪽) <table border="1"> <tr> <td>접수번호</td> <td>접수일</td> <td>처리기간</td> <td>7일(신고: 3일)</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신청항목</td> <td>[]허가 []신고 []연장허가 []연장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td> </tr> </tabl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신청항목	[]허가 []신고 []연장허가 []연장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신청항목	[]허가 []신고 []연장허가 []연장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 출처 : 경기도 의왕시 행정업무 개선 자치단체 의견

- ◎ 또한,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시 기존 관리자가 주로 광고업체 또는 광고주로 되어있으나, 기존 관리자 등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신고 시에 어려움이 존재함
-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인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근거로 현재 그 광고물을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변경 후 관리자)의 서명만 요구하도록 서식변경 검토 요구함
- ◎ 서울 서초구의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는 기타 의견을 보면
 -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대상이나, 법정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신청하고자 할 때 근거조항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기한이 지나 허가(신고)신청할 경우, 근거조항(과태료 부과 등)을 마련하여 연장허가(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불합격한 경우,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위반조치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안전점검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위반조치 필요를 요구하고 있음
 - 아파트 명칭 등 사전 허가(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설치 후 허가(신고) 신청할 경우, 사후심의·허가(신고)가 되지 않아, 철거 후 허가 신청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후심의·허가(신고)를 원할 경우 서울시 전체 관련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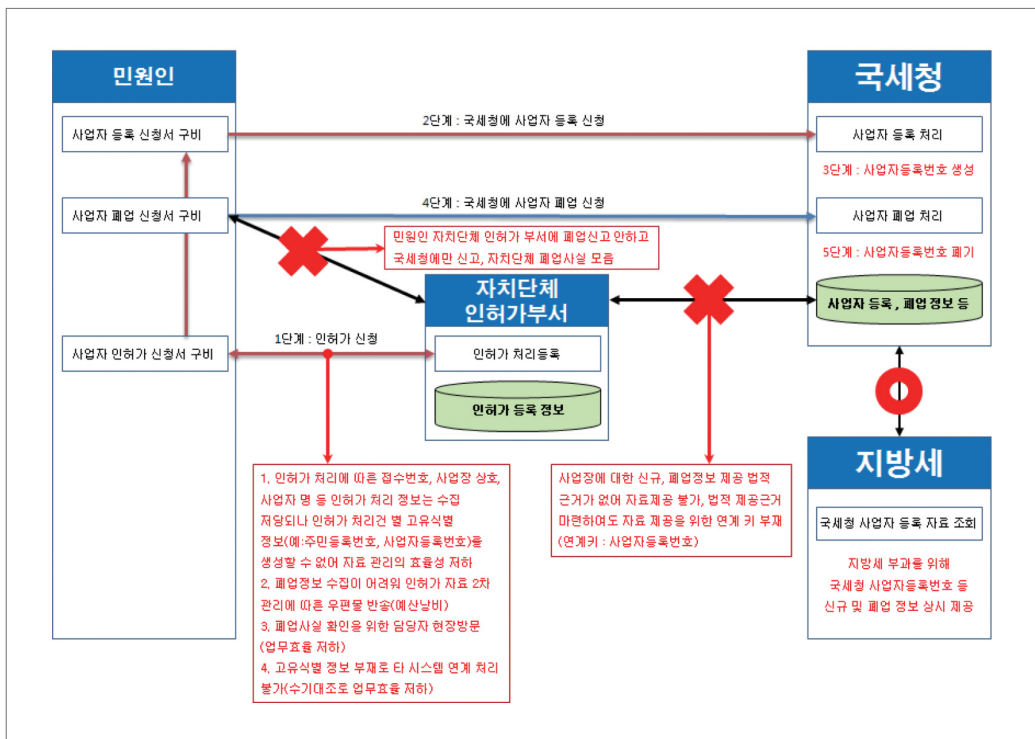
Ⅳ. 중장기적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1. 국세청 사업자정보 연계를 통한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 새울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앞서 발견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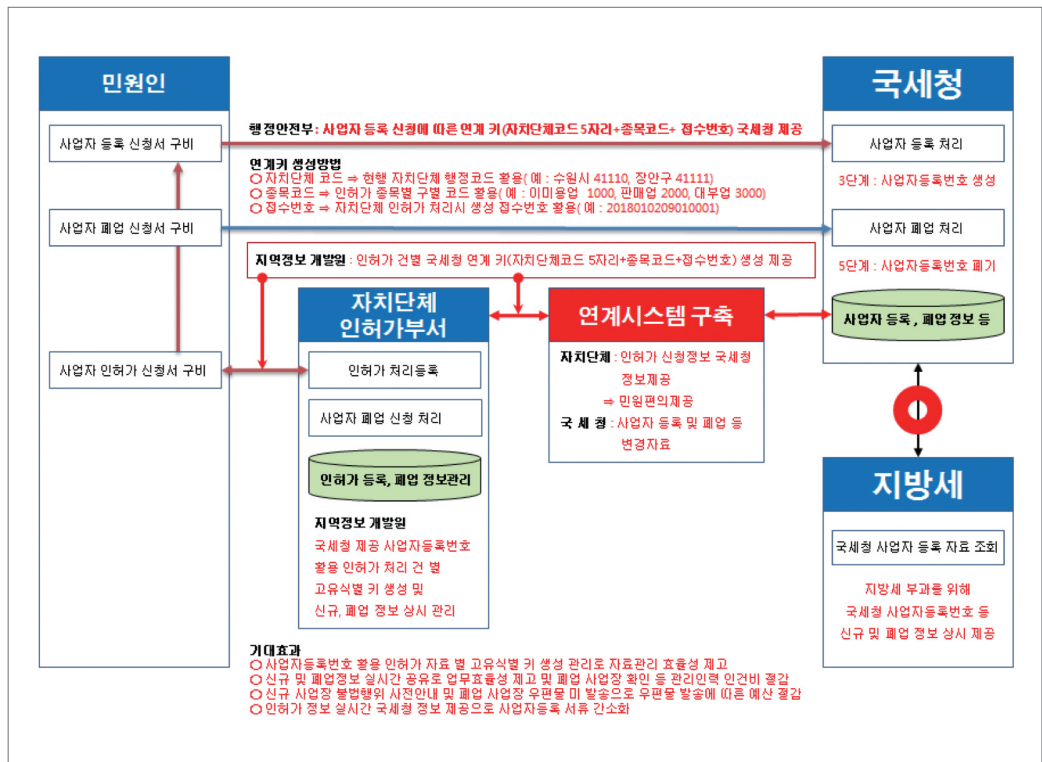
- 현행 새울행정시스템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록번호 및 신고 정보만 관리하고 있음
- 광고주 사업장 폐업에 따른 추가 허가(신고) 절차가 없어 새울행정시스템 옥외광고물 정보의 현행화가 불가함
-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 전수조사 안내문 발송 등 오류 정보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사업장 변경, 폐업 등 허가(신고) 자료에 대한 수정사항 발생 시 담당자가 신청 자료와 보유 자료 대조를 통한 오프라인 처리로 업무지연
- 허가(신고) 자료에 대한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부재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 및 타 시스템 폐업정보 등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하여 업무효율성 저하

〈그림 10〉 광고물 인허가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점



- ◎ 위의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사업자정보와 연계된 시스템을 강구할 수 있음
- 민원인 사업장 허가(신고) 요청에 따른 처리시 자치단체코드+허가종목코드+접수번호 등 추가정보 제공
 - 민원인 세무서 방문 시 자치단체코드+허가종목코드+접수번호 및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 및 자치단체코드+허가종목코드+접수번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자치단체 통보
 - 자치단체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신 및 허가(신고)자료 업데이트
 - 국세청(세무서) 및 자치단체 허가(신고)부서 변동자료 발생시 상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에서는 국세청(세무서)에 허가신고내용 전송
 - 국세청(세무서)에서는 허가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간소화
 - 국세청(세무서) 신규, 폐업 사항 발생 시 자치단체 정보제공 → 자치단체 허가(신고)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그림 11〉 타기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인허가 업무처리



◎ 이러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와 국세청(세무서) 정보 시스템 연계 처리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자료 관리의 효율성 제고
- 허가(신고)자료 국세청 사전제공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간소화
- 폐업 정보 연계처리로 허가(신고) 기간만료 등 후속 조치에 따른 우편물 오발송 예산낭비 방지
- 허가(신고)업무 온라인 처리로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 증대
- 신규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 정보 수집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안내 실시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예 : 옥외광고물을 허가(신고)없이 설치하는 행위 사전예방)
-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예방은 향후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부터 시민의 재산권 보호
- 향후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인터넷 허가(신고) 접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옥외광고물 온라인 허가(신고) 활성화

(1) 전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한 옥외광고 민원

◎ 민원24는 국민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기술(IT)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보화 인프라를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국민이 민원신청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합전자민원창구임

◎ 행정안전부는 2002년 11월 전자민원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7년 2월 현재, 인터넷으로 5,000여종의 법정민원사무에 대한 안내, 3,000여종 민원에 대한 신청, 1,000여종의 민원에 대한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제공하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및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등의 7종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14〉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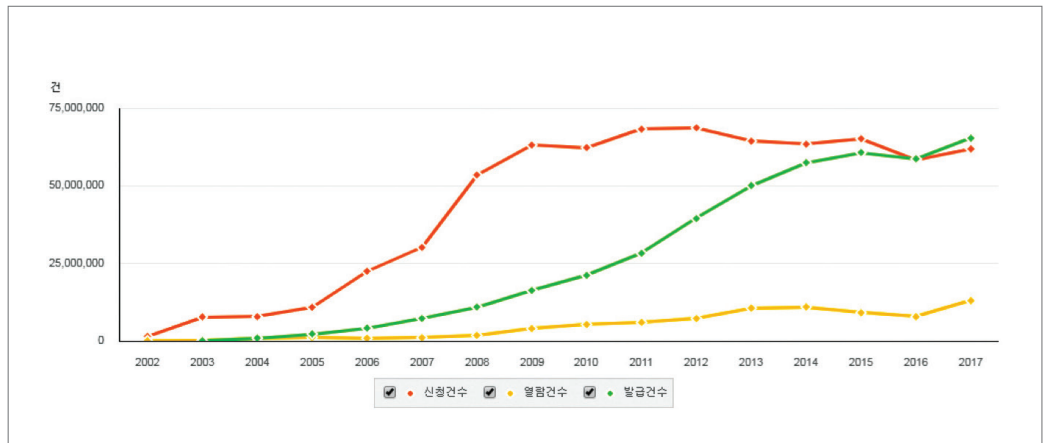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온라인 신청종수	2,933종	2,968종	2,903종	2,903종	3,049종	3,003종
온라인 발급종수	1,166종	1,163종	1,143종	1,142종	1,094종	1,058종

◎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비 서류가 있는 민원사무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온라인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발급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보안 점검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결과물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 개시 후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발급 대상 지속적 확대되고 있으며 <그림 12>는 민원24 서비스의 현황임

<그림 12>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 현황 추이



- ◎ 옥외광고물 민원 역시 이들 중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연장허가, 안전도 검사신청 등 총 9가지의 민원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함 (<그림 13> 참조)

〈그림 13〉 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한 옥외광고물 민원업무

번호	민원사무명	인터넷신청	처리기관	단순/복합	유형	수령방법	본인확인
1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신청	시,도, 시,군, 구	단순민원	허가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불필요
2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신청	시,도, 시,군, 구	복합민원	허가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불필요
3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	▶신청	시,도, 시,군, 구	단순민원	허가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불필요
4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신고	▶신청	시,도, 시,군, 구	단순민원	허가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불필요
5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신청	시,도, 시,군, 구	복합민원	허가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불필요
6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	▶신청	시,도, 시,군, 구	단순민원	허가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불필요
7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신청	시,군, 구	단순민원	검사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불필요
8	옥외광고업변경등록신청서	▶신청	시,군, 구	단순민원	등록	등기보통우편,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방문수령, 일반보통우편	불필요
9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신청	시,군, 구	단순민원	교부	등기보통우편,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방문수령, 일반보통우편	불필요

(2) 온라인 민원 신청 시 발생하는 문제점

- ◎ 옥외광고물 민원의 법률상 처리기간은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및 안전점검 신청 7일(신고 3일),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즉시, 옥외광고사업 등록 신청 7일,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4일로 규정하고 있음
- ◎ 다만, 옥외광고물 민원의 경우 광고물의 시안, 크기 등 광고물 자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함은 물론, 광고물이 설치되는 건물의 임대계약 및 설치 동의서 등의 관련 문서를 일일이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검토 시간이 필요함
- ◎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법정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는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실제 접수 처리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곤 함

- ◎ 온라인 민원접수의 경우 민원인과의 사전 협의(광고물에 대한 정보 교환, 설치 위치 및 설치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관련 서류의 준비 등)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되기 때문에 추후 행정 지연 및 진행에 있어서 불만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 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신청 시 추가해야 하는 정보와 문서들에 있음
 - 민원인은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정보에 있어서 자치단체에 실제로 방문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입력할 수 없는 정보들을 요구함 (<그림 14> 참조)

〈그림 14〉 민원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중 일부

신청 내용			
광고물등의종류*			
수량*		규격*	×
표시위치 또는 장소	기본주소	주소검색	
	상세주소		
광고내용*			
광고물등 관리자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 -
주소*	기본주소	주소검색	
	상세주소		
표시기간	당초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타			

- 광고물의 최초 설치 · 표시를 신청할 때 기존에 제출했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함 (<그림 15> 참조)

〈그림 15〉 민원24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신청서 중 일부

설계도서(신규표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출방법 *	☒ 파일첨부 ☐ 우편 ☐ 팩스 ☐ 방문 ☐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doc, hwp, pdf, ppt, xls, jpg, dwf, dws, gui 파일 형식만 업로드하실 수 있으며, 업로드 제한 용량은 2MB 입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파일 이름</th> <th>파일 크기</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td> </tr> </tbody> </table> 최대 5 개 10 MB 제한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추가 항목제거 전체 항목제거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 일부 문서의 경우 온라인 제출이 아닌 실제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그림 16〉 참조)

〈그림 16〉 민원24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신청서 중 일부

옥외광고업등록증	
제출방법 *	☒ 우편 ☐ 방문
구비서류	※ 구비서류 우편제출 시 유의사항 1. 민원 신청 후 "나의민원 > 신청내역 > 해당민원사무명 선택"에서 민원신청 확인증보기 선택. 2.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물에 동봉하기 바랍니다. 3. 민원처리 시 필요하오니 회원정보 또는 신청서 상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증 출력 > 동봉(확인증, 구비서류)

(3) 옥외광고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해외사례

◎ 싱가포르 건설청에서는 건축규제 옥외광고물법을 Outdoor Advertising Sign과 Signboard를 관리하고 있

으며 Advertisement Licensing System(ALS)를 이용한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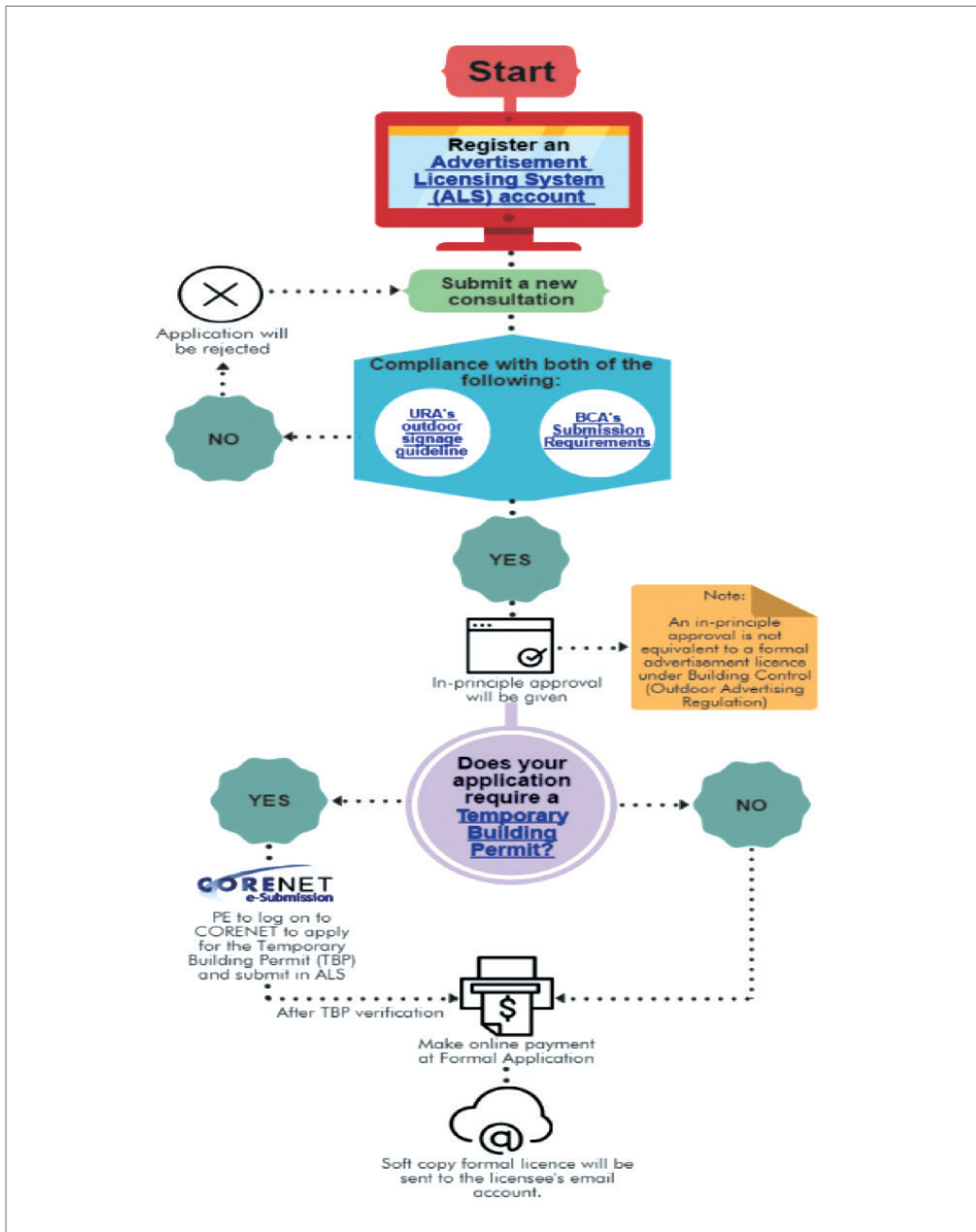
〈그림 17〉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_Singapore Advertisement Licensing System



© 민원인이 Advertisement Licensing System(ALS)에 접속하여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 → 디자인 및 안전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엽의 제안을 제출 →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완료하면 광고물에 대한 면허가 발급됨 (<그림 18> 참조)

◎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와 옥외광고물 심의제도가 결합하여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음

〈그림 18〉 Application Process to apply for an Advertising Sign / a Signboard Licence



(4) 온라인 민원 활성화 방안

-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디지털 시대에 옥외광고물의 온라인 민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 가령, 위에서 요구 정보들 중 민원인이 자신의 정보 또는 기존의 광고물에 대한 등록번호만 조회하면 기존에 자치단체에 등록된 광고물의 크기, 위치, 수량, 내용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별도의 확인과정 없이 즉각적인 민원 접수가 이루어질 경우 민원인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공무원 역시 일일이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 또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기타 국세청(세무서) 정보와 연계하면 업소의 휴 · 폐업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연고 간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폐업과 관련해서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시장 등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으며,
 -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가 아닌 일반 업소의 간판일 경우 이러한 조항 조차 없기 때문에 일반 업소의 폐업은 자진 신고가 아닐 경우 자치단체에서는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28.]

제47조(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 해당 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및 타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모습일 것임

- ◎ 또한, 상기의 민원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도 서비스 및 심의제도와 연계할 필요로 하므로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상기의 인천광역시 중구 등의 의견에서와 같이 현재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간판을 게시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단계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허가(신고)절차에 의해 추후 건물사용자는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건물주(소유자)가 최초에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의거 통일된 기준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문헌

- 천용석 · 전종우 · 이상원 · 조재수 · 박현 · 양태건 · 김윤정 · 조용혁 (2016), 옥외광고 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옥외광고센터 연구보고서
- 한혜영 (2013),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222호.
- 한국옥외광고센터 (2017), 2017 옥외광고통계.
- 싱가포르 건설청 https://www.bca.gov.sg/Advertisement/Sign_Licence_Requirements.html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